

확인서

1. 인적사항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		
	(현재) (협의 당시)	(현재) (협의 당시)				
2. 비위 유형	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성폭력 범죄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성매매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성희롱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 제외)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소극행정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성 관련 비위 또는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부정청탁		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	3. 징계부가금	대상 여부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, 대상금액(원, 배)				
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						
4.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	공적 사항		징계 사항[불문(경고) 포함]			
	포상일	포상 종류	시행청	날짜	종류	발령청
	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		
5. 혐의자의 평소 행실	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		
	주의·경고 횟수,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					
6. 그 밖의 사항	「국가공무원법」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 ※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제5항에 따라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,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, ‘해당함’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.					
	퇴직 예정일					
	징년: . . ., 계급징년: . . ., 근무기간 만료: . . ., 그 밖의 사항(): . . .					
	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: 년 월					
	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					

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책임자 (소속 및 직위)

(직급)

(성명)

(서명 또는 인)

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(직위)

직인